

서울지방법원

1999. 6. 10. 판결선고	인
1999. 6. 10. 원본영수	

판 결

사 건 99가소31010 손해배상(기)
 원 고 음 영 천
 서울 강북구 미아8동 324의 73
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, 하 승 수
 피 고 대 한 민 국
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상 천
 소송수행자 임 수 광

장제 4호증

변 론 종 결 1999. 6. 10.
 주 문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. 1. 21.부
 터 완제일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 3.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
 으로 한다.
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
 본 송달일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
 급하라.

1999. 6. 1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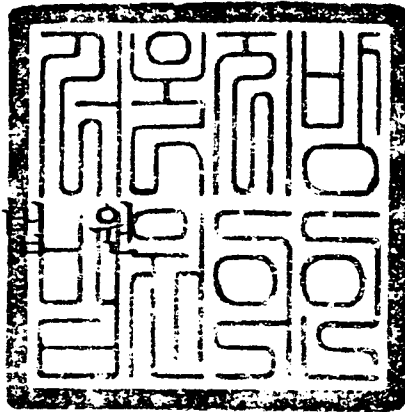
판 사 김 중 필



정 본 입 니 다.

1999. 6. 18

서 울 지 방



법무국장

김 호



위 사 분 함
법무국 하 승 순